

대학원 학칙

<극동규정 제47호> <시행일 2026.07.02.>

제정: 2003.01.13.
제26차 개정: 2023.12.01.
제27차 개정: 2024.11.01.
제28차 개정: 2025.05.01.
제29차 개정: 2025.11.03.
제30차 개정: 2026.07.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극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함) 학칙 제1절 교육조직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1.>

제2조(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표) 우리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개정 2010.09.02., 2011.08.19., 2018.10.08., 2020.06.01., 2022.12.01., 2026.07.02.>

구 분	종 류	교 육 목 표
일 반 대학원	대학원	심오한 학술의 이론과 정치한 응용방법을 탐구하며, 전문적 지도자의 자질과 인격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특 수 대학원	글로벌대학원	21C 국가 및 지역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재를 연계하고 현장중심의 교육방식을 채택하여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한다.

제3조(학위과정) ① 우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06.01.>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② ①항에 의하여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두는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함)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6.01.>
- ③ 각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0.06.01.>
-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세칙<극동규정 제99호> 및 관련 법령과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06.01.>
- ⑤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6.01., 2025.11.03.>
- ⑥ (박사과정 신설)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의 1/4 이상은 설치 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논문, 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2편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3편이상, 예체능계열 2편이상 되어야 한다. 연구실적이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에서 인정하고 검색가능한 등재지, 등재후보지, SCI, SCOPUS, 저서를 말한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인정되는 연구실적은 본교 교수업적평가규정 제21조에 따른다.

제4조(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1.>

- ① 각 과정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11.03.>
- ② 제1항의 각 학과에 전공분야를 둘 수 있으며 전공분야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학·군제휴협약에 의한 군위탁생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지원자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운영 일반

제5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1학기, 2학기로 나눈다.
<신설 2020.06.01.>

② 제1항의 학기 외에 방학 중 종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 학기를 둘 수 있다.<신설 2020.06.01.>

제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우리 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의 표와 같다.<개정 2013.05.21., 2017.04.25., 2018.10.08., 2020.06.01., 2026.07.02.>

구분	종류	학위과정	수업연한	재학연한
일반대학원	대학원	석사	2년(4학기)	4년(8학기)
		박사	2년 6월(5학기)	7년(14학기)
		통합	4년 6월(9학기)	8년(16학기)
특수대학원	글로벌대학원	석사	2년(4학기)	4년(8학기)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20.06.01.>

④ 삭제<2020.06.01.>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06.01.>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2020.06.01.>

③ 제1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이수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06.01.>

제8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06.01.>

1.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 겨울방학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이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0.06.01.>

③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6.01.>

제9조(수업방법)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원격강의, 팀티칭 수업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6.01.>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이 원칙이나, 야간에 수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생 모두의 동의를 얻어 주간에 수업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원격강의, 팀티칭 수업, 특강 등으로, 실습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06.01.>

③ 통신망, 인터넷, 위성 방송망 등을 이용한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유학생은 해당학년 또는 해당 학기 이수학점 기준 비대면 비실시간 동영상 100%로 구성된 교과목의 이수를 총 이수학점의 30%까지 허용(인정)한다.<신설 2025.11.03.>

제2절 입학과 등록

제10조(입학시기) 우리 대학원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01.30., 2020.06.01.>

제11조(입학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06.01.>

2.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06.01.>

② <개정 2015.05.15., 삭제 2026.07.02.>

③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의 대학원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5.15., 2016.02.24., 2020.06.01.>

1. 일반대학원: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 기간은 휴직하여야 한다.

2. 특수대학원: 임용전공분야와 다른 전공의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④ 학·군체휴협약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군위탁생은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단, 군위탁지정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06.01.>

제12조(지원절차 및 전공)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②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자 중 타 전공자는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해진 보충과목(교과)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3.05.21., 2018.10.08., 2020.06.01.>

③ 지원자의 구비서류는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제13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서술전형 및 구술면접전형, 필답시험전형 중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예체능계열 학과에 한하여 실기 및 기능시험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시험의 방법 및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20.06.01.>

1.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연구계획, 학부성적, 대학원과정 이수를 위한 전공수행 능력, 인성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2. 필답시험전형은 논문, 전공과목, 외국어 중에서 행하는데, 종별선택과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전공 관련분야에 전문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전형 시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20.06.01.>

③ 입학전형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모집요강으로 정한다.<신설 2020.06.01.>

제14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06.01.>

②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영구수료자는 1회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잔여재학기간은 2년(4학기) 이내로 한다.<신설 2015.05.15., 개정 2020.06.01.>

④ 편입학 및 재입학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06.01.>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대학원 입학은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신설 2020.06.01., 개정 2026.07.02.>

②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지원자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환학생, 정부(외국정부 포함) 초청·지원 장학생, 영어 능력 공인 성적 제출자 및 대학원이 지정한 외국인 학위과정(이중언어·영어전용 과정 등) 입학자는 한국어 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01., 2026.07.02.>

③ 입학이 허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신설 2020.06.01., 개정 2026.07.02.>

1.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입학금 및 등록) ① 신입학,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학자는 입학금의 1/2인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신설 2020.06.01., 개정 2026.07.02.>

② 등록은 정규등록, 학기초과등록 및 연구등록으로 구분하며, 각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 아래의 권한을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등록의 경우 재학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자는 매 학기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0.06.01., 2026.07.02.>

1. 정규등록: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2. 학기초과등록: 수업연한이 경과하였으나 수료학점을 미취득한 학생으로서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고 각종 자격시험 응시 및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연구등록: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수료자)로서 재학연한 내에 각종 자격시험 응시 및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각 대학원의 과정별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 학기는 아래와 같다.<신설 2020.06.01.>

구분	종류	학위과정	정규등록(수업연한 학기)	연구등록(재학연한-수업연한)
일반대학원	대학원	석사	2년(4학기)	4학기(8학기-4학기)
		박사	2년 6월(5학기)	9학기(14학기-5학기)
		통합	4년 6월(9학기)	7학기(16학기-9학기)
특수대학원	글로벌대학원	석사	2년(4학기)	4학기(8학기-4학기)

④ 수업연한 초과자 중 미수료자의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신설 2020.06.01., 개정 2026.07.02.>

1. 3학점 이하: 해당 학기 등록금의 50%
2. 4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⑤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학연한이 경과한 영구수료자가 재입학할 때에는 재입학금(입학금의 50%)과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1., 개정 2026.07.02.>

⑥ 등록금을 납부하고 규정에 따른 기일 내에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신설 2020.06.01.>

제17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을 반환한다. <신설 2020.06.01.>

제3절 학적관리

제18조(휴학 및 복학) ① 휴학은 군입대, 창업,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과 해외파견, 취업준비, 경제사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0.08., 2020.06.01., 2026.07.02.>

② 제1항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08., 2020.06.01.>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과 질병으로 인한 의병휴학, 장기해외지사근무(가족포함), 장기해외출장(가족포함), 임신, 출산, 육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08., 2020.06.01.>

④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지체 없이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⑥ 휴학자의 복학은 복학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08., 2019.01.30.>

제19조(자퇴) 자진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08., 2020.06.01.>

제20조(제적 및 영구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6.01., 제목개정 2026.07.02.>

1. 등록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
4. 재학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

② 수료자 중 재학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영구수료 처리하며, 영구수료자는 재입학하지 않고는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26.07.02.>

제21조(전공변경) ① 전과 및 전공변경은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승인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삭제 2026.07.02.>

제4절 교육과정, 교과목 및 학점취득

제23조(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06.01.>

② 교과목은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신설 2020.06.01.>

③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0.06.01.>

④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6.01.>

제24조(이수학점 및 수료) ① 각 대학원의 과정별 수료학점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논문연구는 총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3.05.21., 2018.10.08., 2020.06.01., 2022.12.01., 2026.07.02.>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 영역별	전공	연구(필수)	수료학점 계
석사	24	2(필수)	24학점 이상
박사	36	3(필수)	36학점 이상
통합	60	3(필수)	60학점 이상

2. 특수대학원 및 연구과정

대학원별			영역별	전공	연구(필수)	수료학점 계
글로벌대학원	사회복지 학과	논문작성제	24	3(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27	-	27학점 이상	
	그 외 학과	논문작성제	24	2(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30	-	30학점 이상	
연구과정			12	-	12학점 이상	

② 논문작성제를 적용받는 학생은 3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해외연수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21., 2020.06.01., 2022.12.01., 2026.07.02.>

1. 석사과정: 학기당 1학점씩 총 2학점

2. 박사과정: 학기당 1학점씩 총 3학점

③ 각 대학원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최소 이수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의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0.06.01.>

④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7.02.>

1. 수료: 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상태

2. 졸업: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상태

⑤ 학위과정 수료자 중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수료증서(서식6)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07.02.>

제25조(보충과목) ① 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 보충과목(교과) 이수가 필요한 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21., 2018.10.08., 2020.06.01.>

② <신설 2020.06.01., 삭제 2026.07.02.>

③ 주임교수는 부전공 이수대상자에 대하여 소속 교수와 협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지정하고 대학원장에게 첫 학기 개시 1주일 이내에 “보충과목부과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06.01.>

④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총 9학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6.01.>

제5절 시험, 성적, 학점인정

제26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 이를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6.01.>

제27조(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의 평점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03.>

등급	A+	A	B+	B	C+	C	D+	D	F	P, S	NP, I
점수	100 ~ 95	94 ~ 90	89 ~ 85	84 ~ 80	79 ~ 75	74 ~ 70	69 ~ 65	64 ~ 60	60미만	60이상	60미만
평점	4.5	4.0	3.5	3.0	2.5	2.0	2.5	2.0	0	불계	불계

② 평점평균과 백분위점수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산출하며 그 외 기준은 극동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2조(성적산출) 내지 제43조(동점자 처리)를 적용한다.<신설 2025.11.03.>

1. 평점평균: (과목 평점×과목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 수[불계 과목 제외]

2. 백분위점수: 평점평균×10+55

③ 취득학점의 인정은 각 과목당 성적등급 D(평점 1.0)이상으로 하고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의 인정은 총성적 평점평균 B(3.0)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11.03.>

④ 매 학기 출석일수가 4분의 3 미만일 때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점은 자동 F처리된다.<개정 2013.05.21.>

⑤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06.01.>

제28조(학점인정 및 학점교류) ① 타 대학원으로부터 편입한 자는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05.21.>

② 대학원은 타 학과(타 전공 포함) 및 타 대학원간의 공동강의를 통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01.>

③ 대학원과 학점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타 대학원(국내·외 대학원 및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까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원에 개설된 학과와 동일한 학과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20.06.01.>

④ 교내대학원 타 학과(타 전공포함) 교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재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7.04.25., 2020.06.01.>

⑤ 해외연수는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및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50시간 당 1학점으로 인정하며 150시간 이상 이수 시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대학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06.01.>

⑥ 별도의 협약에 의한 경우는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다. <신설 2010.11.12., 개정 2020.06.01.>

제29조(자격시험) ①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6.01.>

1. 외국어시험 : 매년 4월, 10월에 실시한다.

2. 종합시험 : 매년 4월, 10월에 실시한다.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은 모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그 실시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해당 학과에서 시행하는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졸업시험) 특수대학원은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06.01.>

① 졸업시험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제에서 졸업시험제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05.21., 개정 2020.06.01.>

제31조(학위논문)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학위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04.>

① 대학원생은 학위수여일 1개월 이전에 학위청구 논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② 대학원은 논문 제출자로부터 정해진 논문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06.01.>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논문심사위원이 실시하며, 논문심사 위원 수의 수는 석사학위과정 3명, 박사학위과정 5명으로 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의 위촉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주임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 교원 또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추천한다.

2.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25.05.01.>

⑤ 이 조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06.01.>

제6절 공개강좌, 연구과정

- 제32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에는 심오한 학문 또는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정의 수료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 ② 입학자격은 제1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하며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 ③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하되,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연구생에게는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서식7)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06.01.>
- ⑤ 연구생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석사과정에 준한다.<개정 2020.06.01.>
- ⑥ 연구생이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때는, 이미 수강한 과목 중 B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 학점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단축되지는 아니한다.<개정 2020.06.01.>
- 제33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개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20.06.01.>
- ③ 공개강좌의 수강생은 정해진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제3장 학위수여

- 제34조(학위수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0.06.01., 2026.07.02.>
1. 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해당 과정 수료 기준 학점 이상 취득
 2. 전체 평균평점 B학점(3.0) 이상
 3. 학위취득 자격시험 합격
 4.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 단, 졸업시험제를 적용받는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생은 졸업시험 합격을 학위청구논문 심사합격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0.11.12., 2020.06.01., 2026.07.02.>
- ② 통합과정 퇴학자 또는 중도 포기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서식1, 4)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서식2, 3)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④ 우리 대학원과 국내·외 타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양교 각각의 명의로 복수학위(dual degree)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 수여를 위한 교류대학 수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02.24., 2020.06.01.>
- ⑤ 복수학위학위과정 학생은 우리 대학원과 교류대학의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류대학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6.02.24., 2020.06.01.>
- ⑥ 외국인 유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을 갖추고 졸업학기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해당하는 성적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이중언어입학생, 영어사용과정 입학생, 영어능력시험 입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01., 2026.07.02.>
1. 한국어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단, 예체능계열 학과는 3급 이상)
 - 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 다. 세종학당 ‘세종한국어 중급 2’ 과정 수료 및 평가 합격
 - 라. 상기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2. 영어능력: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 영어 능력

제35조(학위종별)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20.06.01.>

제36조(명예박사학위수여)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서식5)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06.01.>

제37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05.15.>

②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05.15.>

제4장 학생

제38조(학칙준수) 대학원생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제39조(포상 및 징계) ①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06.01.>

② 학칙을 위반하거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0.06.01.>

제40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06.01.>

제5장 조직 및 대학원위원회

제41조(조직) ① 직제는 우리 대학교 직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06.01.>

② 각 대학원에는 학과 및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주임교수는 전공분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의 전공과제의 지도 및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0.06.01.>

제42조(대학원위원회) 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개정 2020.06.01.>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7인(위원장 포함) 이상의 위원(교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개정 2018.10.08., 2025.11.0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0.03.01.>

3.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7.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0.06.01.>

⑤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06.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각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제3조(다른 학칙 및 규정의 폐지) 본 학칙 시행과 동시에 극동대학교 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특수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학위수여규정, 특수대학원학위수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각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 학칙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각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 학칙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각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 학칙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각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 학칙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각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 학칙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각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 학칙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정보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 가족치료전공 및 통합예술치료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가족치료및통합예술치료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전공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행정대학원과 산업정보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글로벌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대학원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시행일 현재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단 본 규정 19조1항, 21조1항, 28조의2 2항, 3항은 2014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8조 ③항과 [별표 1]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12조 3항, 제31조는 기 영구수료자 및 기학위수여자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별표 1]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시행일 현재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단 본 규정 제8조3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별표 1]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학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별표 1]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별표 1]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시행일 현재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은 시행일 현재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단, [별표 1]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3조 신설 항에 대하여는 2021학년도 전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전 학칙 제9조 제4항, 제27조 및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개정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제27조 학업성적 산출방식 등은 시행일 기준 과거 재학하였던 학생과 재적생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개정 학칙 제22조과 제34조 제6항을 제외하고,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개정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2022학년도 폐원된 산업기술보안대학원 및 보건과학대학원과 2025학년도 폐원된 교육대학원 재적생 등에 대하여 타 대학원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개정 학칙 제34조 제6항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위수여 특별요건은 2025학년도 후기(2026학년도 2학기) 졸업사정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학원별 설치 학과 및 입학정원<개정 2024.11.01., 2025.11.03., 2026.07.02.>

구분	대학원별	과정	계열별	학과	전공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인문사회	경영학과	경영학, 독서경영학	100명
				항공운항서비스학과	-	
				항공경영학과	항공운항학, 항공경영학	
				항공융합안전학과	-	
				외식경영학과	-	
				상담심리치료학과	심리재활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사회복지학과	-	
			자연	보건과학과	보건과학, 공공위생학	
				바이오헬스융합학과	-	
				간호학과	-	
			공학	AI컴퓨터공학과	-	
				에너지IT공학과	-	
				인공지능보안학과	-	
				항공우주공학과	-	
				수소안전융합학과	수소안전	
			예체능	디지털영상콘텐츠학과	-	
				뉴미디어공연예술학과	-	
		석사과정	인문사회	경영학과	-	30명
			자연	조리·식품가공학과	-	
			공학	AI컴퓨터공학과	-	
				에너지IT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인공지능보안학과	-	
				수소안전융합학과	수소안전	
				항공안전보안학과	항공안전	
			예체능	디자인학과	-	
				공연영상학과	-	
특수대학원	글로벌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경영학과	-	160명
				독서경영학과	-	
				이미지경영학과	이미지&PI코칭	
				건물자산관리학과	-	
				사회복지학과	-	
				항공서비스경영학과	-	
				와인소믈리에학과	-	
				상담심리치료학과	가족치료및통합예술치료, 심리재활	
				심리상담학과	-	
				다문화학과	다문화사회	
				경찰행정학과	-	
				글로벌영어교육학과	-	
				한국어교육학과	-	
				국가안보정책학과	-	
			자연	보건과학과	보건학, 보건안전, 방사선학, 오토메트릭	
				재활과학과	발달재활, 작업치료학	
				간호학과	-	
			공학	항공안전보안학과	항공운항관리, 항공안전, 항공보안	
				항공우주공학과	항공기계, 항공모빌리티	
				인공지능보안학과	-	
				수소안전융합학과	수소안전	
				에너지IT공학과	-	
	총 계					290명

[별표 2] 석·박사학위의 종별<개정 2022.12.01., 2023.12.01., 2024.11.01., 2025.11.03., 2026.07.02.>

대학원구분	대학원별	학위구분	학위과정	계열	학과	전공	학위종별	적용 학년도			
								2024	2025	2026	2027
일반 대학원	일반	학술	박사	인문사회	경영학과	경영학, 독서경영학	경영학박사, 경영학박사(독서경영)	○	○	○	○
		학술	박사	인문사회	항공운항서비스학과	-	항공운항서비스학박사	○	○	○	○
		학술	박사	인문사회	항공경영학과	항공운항학	항공운항학박사		○	○	○
		학술	박사	인문사회	항공경영학과	항공경영학	항공경영학박사		○	○	○
		학술	박사	공학	항공융합안전학과	-	항공융합안전학박사		○	○	○
		학술	박사	인문사회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경찰학박사(경찰학)	○	○	○	○
		학술	박사	인문사회	상담심리치료학과	심리재활	상담심리치료학박사	○	○	○	○
		학술	박사	인문사회	외식경영학과	-	외식경영학박사	○	○	○	○
		학술	박사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박사		○	○	○
		학술	박사	자연	보건과학과	보건과학, 공공위생학	이학박사	○	○	○	○
		학술	박사	자연	바이오헬스융합학과	-	바이오헬스융합학박사		○	○	○
		학술	박사	자연	간호학과	-	간호학박사		○	○	○
		학술	박사	공학	에너지IT공학과	-	공학박사	○	○	○	○
		학술	박사	공학	인공지능보안학과	-	공학박사	○	○	○	○
		학술	박사	공학	AI컴퓨터공학과	-	공학박사	○	○	○	○
		학술	박사	공학	항공우주공학과	-	항공우주공학박사		○	○	○
		학술	박사	공학	수소안전융합학과	수소안전	공학박사(수소안전융합)			○	○
		학술	박사	예체능	디지털영상콘텐츠학과	-	디지털영상콘텐츠학박사		○	○	○
		학술	박사	예체능	뉴미디어공연예술학과	-	뉴미디어공연예술학박사		○	○	○
		학술	석사	인문사회	경영학과	-	경영학석사	○	○	○	○
		학술	석사	예체능	공연영상학과	-	공연영상학석사	○	○	○	○
		학술	석사	예체능	디자인학과	-	미술학석사	○	○	○	○
		학술	석사	공학	에너지IT공학과	-	공학석사	○	○	○	○
		학술	석사	공학	인공지능보안학과	-	공학석사(인공지능보안)	○	○	○	○
		학술	석사	공학	친환경에너지공학과	-	공학석사(친환경에너지)	○	○		
		학술	석사	공학	수소안전융합학과	수소안전	공학석사(수소안전융합)			○	○
		학술	석사	공학	항공안전보안학과	항공안전	항공안전보안학석사			○	○
		학술	석사	공학	AI컴퓨터공학과	-	공학석사	○	○	○	○
		학술	석사	공학	컴퓨터공학과	-	공학석사	○	○	○	○
		학술	석사	자연	조리·식품가공학과	-	조리·식품가공학석사		○	○	○

대학원구분	대학원별	학위구분	학위과정	계열	학과	전공	학위종별	적용 학년도			
								2024	2025	2026	2027
특수 대학원	글로벌	전문	석사	인문사회	경영학과	-	경영학석사(경영학)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독서경영학과	-	경영학석사(독서경영)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이미지경영학과	이미지&PI코칭	경영학석사(이미지&PI코칭)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건물자산관리학과	-	건물자산관리학석사(건물자산관리학)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항공서비스경영학과	-	항공서비스경영학석사(항공서비스경영학)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와인소믈리에학과	-	경영학석사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상담심리치료학과	가족치료및통합예술치료	상담학석사(가족치료및통합예술치료)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상담심리치료학과	심리재활	상담학석사(심리재활)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심리상담학과	심리상담	심리상담학석사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경찰행정학과	-	경찰학석사(경찰학)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국가안보정책학과	-	국가안보정책학석사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다문화학과	다문화사회	다문화학석사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글로벌영어교육학과	-	영어교육학석사	○	○	○	○
		전문	석사	인문사회	한국어교육학과	-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학)	-	○	○	○
		전문	석사	자연	보건과학과	보건학	보건학석사(보건학)	○	○	○	○
		전문	석사	자연	보건과학과	보건안전	보건학석사(보건안전)			○	○
		전문	석사	자연	보건과학과	방사선학	보건학석사(방사선학)	○	○	○	○
		전문	석사	자연	보건과학과	옵토메트릭	보건학석사(옵토메트릭)	○	○	○	○
		전문	석사	자연	재활과학과	발달재활	보건학석사(발달재활)	○	○	○	○
		전문	석사	자연	재활과학과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작업치료학)		○	○	○
		전문	석사	자연	간호학과	-	간호학석사	○	○	○	○
		전문	석사	공학	인공지능보안학과	-	공학석사(인공지능보안)	○	○	○	○
		전문	석사과정	공학	항공안전보안학과	항공운항관리학	공학석사(항공운항관리학)	○	○	○	○
		전문	석사과정	공학	항공안전보안학과	항공안전	항공안전보안학석사(항공안전)	○	○	○	○
		전문	석사과정	공학	항공안전보안학과	항공보안	항공안전보안학석사(항공보안)	○	○	○	○
		전문	석사과정	공학	항공우주공학과	항공기계	항공우주공학석사(항공기계)	○	○	○	○
		전문	석사과정	공학	항공우주공학과	항공모빌리티	항공우주공학석사(항공모빌리티)	○	○	○	○
		전문	석사과정	공학	수소안전융합학과	수소안전융합	공학석사(수소안전융합)		○	○	○
		전문	석사과정	공학	에너지IT공학과	-	공학석사			○	○

대학원구분	대학원별	학위구분	학위과정	계열	학과	전공	학위종별	적용 학년도			
								2024	2025	2026	2027
특수 대학원	교육	전문	석사	인문사회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학석사(교육행정)	○			
		전문	석사	인문사회	교육학과	상담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			
		전문	석사	인문사회	교육학과	컴퓨터교육	교육학석사(컴퓨터교육)	○			
		전문	석사	인문사회	교육학과	평생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			

대학원구분	대학원별	학위구분	학위과정	계열	학과	전공	학위종별	적용 학년도			
								2024	2025	2026	2027
일반 대학원	일반	학술	박사과정	공학	정보통신학과	-	공학박사				
		학술	석사과정	공학	정보통신학과	-	공학석사				
		학술	석사과정	공학	스마트모바일학과	-	공학석사				
특수 대학원	글로벌	전문	석사과정	인문사회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	경찰행정학석사(경찰행정학)				
		전문	석사과정	인문사회	호텔관광학과	호텔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석사(호텔관광경영)				
		전문	석사과정	자연	항공운항관리학과	항공운항관리학	항공운항관리학석사(항공운항관리학)				
	보건 과학	전문	석사과정	자연	보건과학과	보건학	보건학석사(보건학)				
		전문	석사과정	자연	보건과학과	방사선학	보건학석사(방사선학)				
	글로벌	전문	석사과정	자연	보건과학과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작업치료학)				
	보건 과학	전문	석사과정	자연	보건과학과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작업치료학)				
		전문	석사과정	자연	보건과학과	비전사이언스학	보건학석사(비전사이언스학)				
	산업 기술 보안	전문	석사과정	공학	빅데이터분석학과	빅데이터보안	공학석사(빅데이터보안)				
		전문	석사과정	공학	인공지능보안학과	인공지능보안	공학석사(인공지능보안학)				
		전문	석사과정	공학	기술보안학과	침해사고대응	공학석사(침해사고대응)				

[서식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논문제목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학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논문이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 에 통과 되어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 함 .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극동대_____

※전공이 없는 학과의 경우 학과명만 기입

[서식2] 논문제출자(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석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논문제목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논문이 대학원 위
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의 자격을 갖추
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극동대_____

[서식3] 비논문자(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석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극동대_____

[서식4]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논문제목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박사학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논문이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 에 통과 되어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 함 .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함 .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극동대_____

※전공이 없는 학과의 경우 학과명만 기입

[서식5] 명예박사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 람 은 에 지 대 한 공 헌 을 하 였 기 에
대 학 원 위 원 회 의 의 결 을 거 쳐 그 공 적 을 기 리 고 자 명 예 ○ ○ 학
박 사 학 위 수 여 를 인 정 함 .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 의 인 정 에 의 하 여 명 예 ○ ○ 학 박 사 학 위 를 수 여 함 .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극동대_____

제 호

수 료 증 서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 람 은 본 대 학 교 대 학 원 ○ ○ 학 위 과 정 ○ ○ ○ 학 과 의
전 과 정 을 수 료 하 였 음 을 증 명 함 .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 의 인 정 에 의 하 여 본 증 서 를 수 여 함 .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전공)연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연구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극 동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